



KTB

이 투자설명서는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
2. 자산운용회사명 : KTB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명 / 상담가능 전화번호

판매회사명	전화번호	판매회사명	전화번호
교보증권	1544-0900	굿모닝신한증권	1588-0365
대신증권(주)	1588-4488	대우증권	1588-3322
미래에셋증권	1577-9300	동부증권	369-3000
메리츠증권	1588-3400	브릿지증권	1566-0900
삼성증권	1588-2323	유진투자증권	1588-6300
솔로몬투자증권	3770-9000	우리투자증권	1544-0000
키움닷컴증권	1544-9000	토러스투자증권	709-2313
하나대투증권	1588-3111	한국투자증권	1599-0114
한화증권	1544-8282	현대증권	1588-6611
하이투자증권	1588-7171	IBK투자증권	1588-0030
LIG투자증권	1544-7600		
경남은행	055-290-8000	광주은행	1588-3388
국민은행	1588-9999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88-8500	제주은행	1588-0079
중소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88-1111
부산은행	1588-6200		

※ 판매회사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 2008년 10월 22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 주소

판매회사명	전화번호	판매회사명	전화번호
교보증권	www.iprovest.com	굿모닝신한증권	www.goodi.com
대신증권(주)	www.daishin.co.kr	대우증권	www.bestez.com
미래에셋증권	www.miraeasset.co.kr	동부증권	www.winnet.co.kr
메리츠증권	www.imeritz.com	브릿지증권	www.bridgefn.com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유진투자증권	www.eugenefn.com
솔로몬투자증권	www.solomonib.com	우리투자증권	www.wooriwm.com
키움닷컴증권	www.kiwoom.com	토러스투자증권	www.taurus.co.kr
하나대투증권	www.daetoo.com	한국투자증권	www.truefriend.com
한화증권	www.koreastock.co.kr	현대증권	www.youfirst.co.kr
하이투자증권	www.hi-ib.com	IBK투자증권	www.ibks.com
LIG투자증권	www.ligstock.com		
경남은행	www.kyongnambank.co.kr	광주은행	www.kjbank.com
국민은행	www.kbstar.com	대구은행	www.dgb.co.kr
신한은행	www.shinhan.com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하나은행	www.hanabank.com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KTB자산운용	www.i-ktb.com



()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4 쪽)

1. 명 칭 : KTB 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47909)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KTB 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5~9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 * 비교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 100% (비교지수는 KTB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i-ktb.com)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투자전략	- 핵심 블루칩 및 미래 성장주 중심의 가치투자 전략 -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적극적인 시세차익 전략 추구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위험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i-ktb.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안영희	42 세	주식 CIO	106 개	49,720 억	- 현대투자신탁운용 등 (총 15년 10개월)
김정희	43 세	채권 CIO	92 개	33,257 억	- 대신투자신탁운용 등 (총 20년 3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본부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투자일임계약 운용규모 : 1,743 억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07.10.01~08.09.30)	최근 2년 (‘06.10.01~08.09.30)	최근 3년 (‘05.10.01~08.09.30)
종류 A	투자신탁	-24.93	7.99	15.20
	비교지수*	-25.61	2.76	5.85
종류 B	투자신탁	-23.73	8.89	
	비교지수*	-25.61	2.76	
종류 C	투자신탁	-24.14		
	비교지수*	-25.61		

* 비교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 100%

* 종류B와 종류C는 각각 종류B 설정일(06.09.13일), 종류C 설정일(07.04.16일) 기준으로 작성

1. 수수료 및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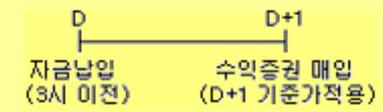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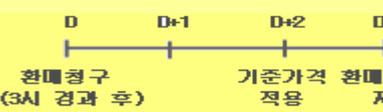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B	종류 C	
종 류		종류 A	종류 B	종류 C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FOFS, 랩 용	제한 없음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해당사항없음		납입금액의 1.0%	
	환매수수료(90 일미만 환매시) ¹⁾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673%	연 0.673%	연 0.673%
		판매회사보수	연 1.580%	-	연 0.580%
		기타보수	연 0.047%	연 0.047%	연 0.047%
		보수합계	연 2.30%	연 0.72%	연 1.30%
	기타비용	실비(연 0.05%)			
총보수·비용비율 ²⁾		연 2.35%	연 0.77%	연 1.35%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9.30.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및 이익금 등의 인출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세부사항은 본문 필히 참조)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 분) 중 매입 또는 환매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00000000@000.000)**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47909)
 -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제2호 종류 A(56188)
 -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제2호 종류 B(60132)
 -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제2호 종류 C(67662)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류 증권투자신탁(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종류A수익증권(표준약관상의 “종류C수익증권”에 해당)
 - 종류B수익증권
 - 종류C수익증권(표준약관상의 “종류A수익증권”에 해당)
4. 자산운용회사 KTB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5.3.3.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 최초 설정
 2005.6.7.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관련 사항(Late Trading) 변경
 2006.3.27. 종류형증권투자신탁으로 변경
6.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

(1) 종류A수익증권

구 분	현재 (2008.9.30)	최근6월전 (2008.3.31)	최근1년전 (2007.9.30)	최근1년6월전 (2007.3.31)	최근2년전 (2006.9.30)
수탁고 금액	17,638	16,946	10,715	8,213	803
수탁고 증가율	4	58	31	923	

(2) 종류B수익증권

구 분	현재 (2008.9.30)	최근6월전 (2008.3.31)	최근1년전 (2007.9.30)	최근1년6월전 (2007.3.31)	최근2년전 (2006.9.30)
수탁고 금액	252	424	282	214	40
수탁고 증가율	-40	50	32	435	

(3) 종류C수익증권

구 분	현재 (2008.9.30)	최근6월전 (2008.3.31)	최근1년전 (2007.9.30)	최근1년6월전 (2007.3.31)	최근2년전 (2006.9.30)
수탁고 금액	4,673	5,003	4,418	2,955	
수탁고 증가율	-6	13	50		

* 6월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임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주식형증권간접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그 밖에 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 등의 채권과 어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투자증권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운용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자산운용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비교지수(Benchmark)는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로 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 주식의 투자전략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의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중점 추구할 것입니다.

핵심 블루칩 및 미래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식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하여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가치투자(Value Investment)를 기본전략으로 할 것이나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적극적인 시세차익 전략도 함께 추구할 것입니다.

■ 채권의 투자전략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 채권등에 투자하여 채권의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를 제외함)

위와 같은 우량채권 등의 운용에 있어 채권의 만기보유전략과 같은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수익률곡선 및 채권간 스프레드 등을 이용한 저위험하의 고수익 전략을 활용하고, 회사 자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이자율 예측 및 채권발행 기관에 대한 신용분석 등에 의한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수행하여 자본이득의 획득을 도모할 것입니다.

■ 어음 등의 투자전략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환매를 원활히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입니다.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전략

선물투자 전략 : 기초자산의 적극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유 기초자산 한도 내에서 헷지전략을 사용합니다.

옵션투자 전략 : 기초자산 또는 선물 포지션의 헷지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시장 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하므로 각종 경제변수들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자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채권 등에 40% 이하를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른 원본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 등을 통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상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2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30% 이상~60% 미만을 투자하는 경우
3등급	중간 위험	BBB급 회사채 및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경우
4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신용등급 A 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원금보존 ELS 포함)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유동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 등)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000원으로 합니다.</p>
산정주기	매일 계산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
공시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
공시장소	<p>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자산운용회사(www.i-ktb.com), 판매회사(교보증권 www.iprovest.com, 굿모닝신한증권 www.goodi.com 대신증권 www.daishin.co.kr, 대우증권 www.bestez.com, 미래에셋증권 www.miraeasset.co.kr, 동부증권 www.winnet.co.kr, 메리츠증권 www.imeritz.com, 브릿지증권 www.bridgefn.com, 삼성증권 www.samsungfn.com, 유진투자증권 www.eugenefn.com, 우리투자증권 www.wooriwm.com, 키움닷컴증권 www.kiwoom.com, 토러스투자증권 www.taurus.co.kr, 하나대투증권 www.daetoo.com, 한국투자증권 www.truefriend.com, 한화증권 www.koreastock.co.kr, 현대증권 www.youfirst.co.kr, 하이투자증권 www.hi-ib.com, IBK투자증권 www.ibks.com LIG투자증권 www.ligstock.com 경남은행 www.kyongnambank.co.kr 광주은행 www.kjbank.com, 국민은행 www.kbstar.com, 대구은행 www.dgb.co.kr, 신한은행 www.shinhan.com,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하나은행 www.hanabank.com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솔로몬투자증권 www.solomonib.com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p>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안영희	주식운용총괄	주식 CIO	49,720 억	- 현대투자신탁운용 등 (총 15년 10개월)
김정희	채권운용담당	채권 CIO	33,257 억	- 대신투자신탁운용 등 (총 20년 3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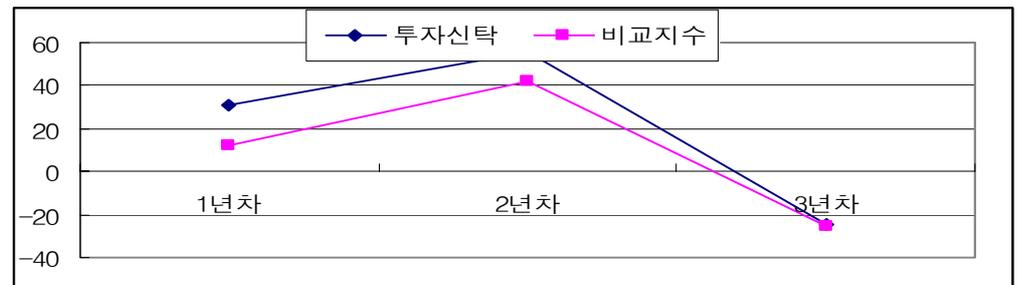
(1) 종류A수익증권

■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1년차 (05.10.01~ 06.09.30)	2년차 (06.10.01~ 07.09.30)	3년차 (07.10.01~ 08.09.30)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31.08	55.36	-24.93	-	-
비교지수	12.32	41.93	-25.61	-	-

* 비교지수 :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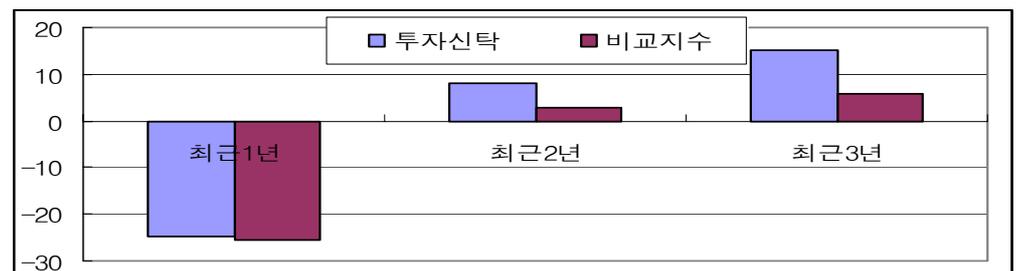


■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투자신탁	-24.93	7.99	15.20	
비교지수	-25.61	2.76	5.85	

* 비교지수 :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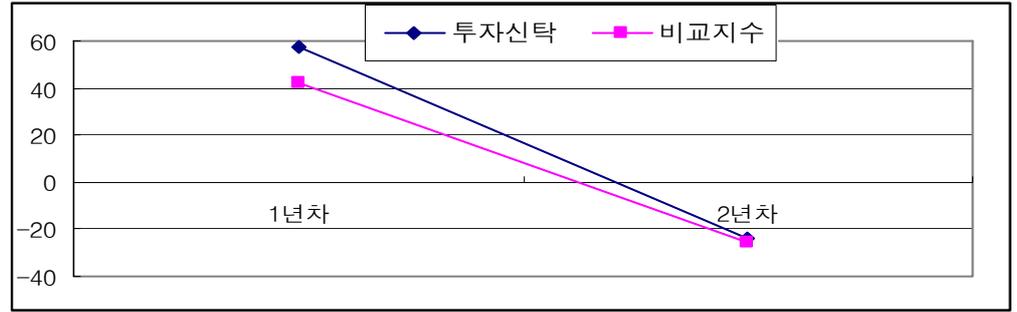
(2) 종류B수익증권

■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1년차 (06.10.01~ 07.09.30)	2년차 (07.10.01~ 08.09.30)	3년차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57.45	-23.73	-	-	-
비교지수	41.93	-25.61	-	-	-

* 비교지수 :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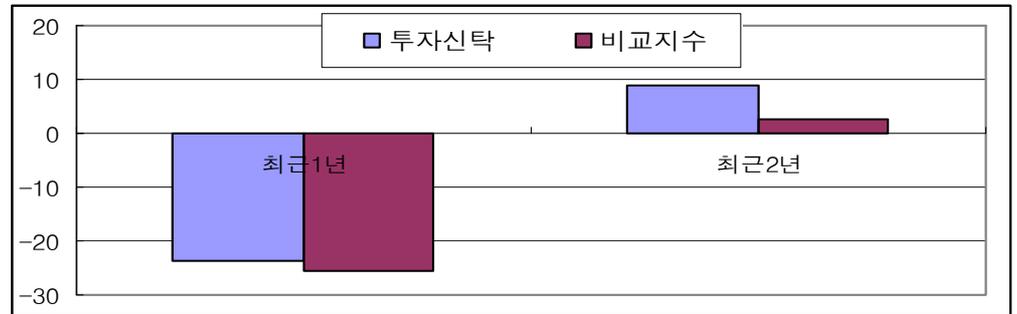


■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구 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투자신탁	-23.73	8.89	-	-
비교지수	-25.61	2.76	-	-

* 비교지수 :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3) 종류C수익증권

■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구 분	1년차 (2007.10.01 ~2008.09.30)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24.14	-	-	-	-
비교지수	-25.61	-	-	-	-

* 비교지수 :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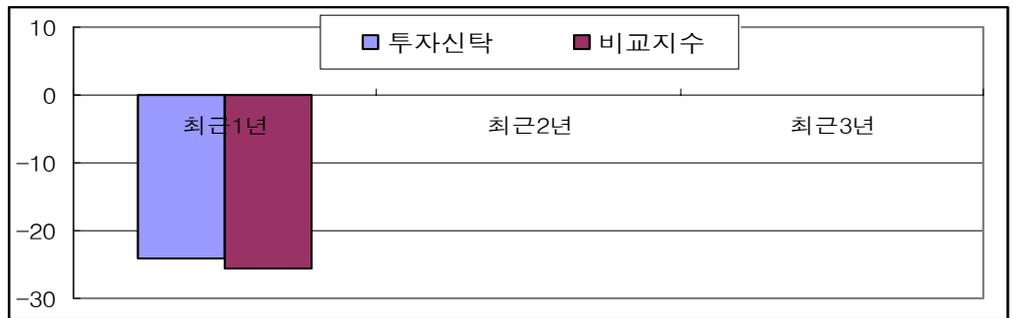


■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1년	최근2년
투자신탁	-24.14	-	-	-
비교지수	-25.61	-	-	-

* 비교지수 :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x 100%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B	종류 C	
선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납입금액의 1.0%	
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합계	납입금액의 1.0%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B	종류 C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0.673%	연 0.673%	연 0.673%	매 3월 후 급
판매회사보수	연 1.580%	-	연 0.580%	
수탁회사보수	연 0.030%	연 0.030%	연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7%	연 0.017%	연 0.017%	
기타비용	실비(연 0.05%)			사유발생시
총보수 · 비용비율	연 2.300% + 0.05%	연 0.720% + 0.05%	연 1.300% + 0.05%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회계년도(2007.3.2-2008.3.2)의 기타비용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는 신탁회계에서 비용계정이 아닌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기타비용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비율에 관하여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함은 당해 종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특정 종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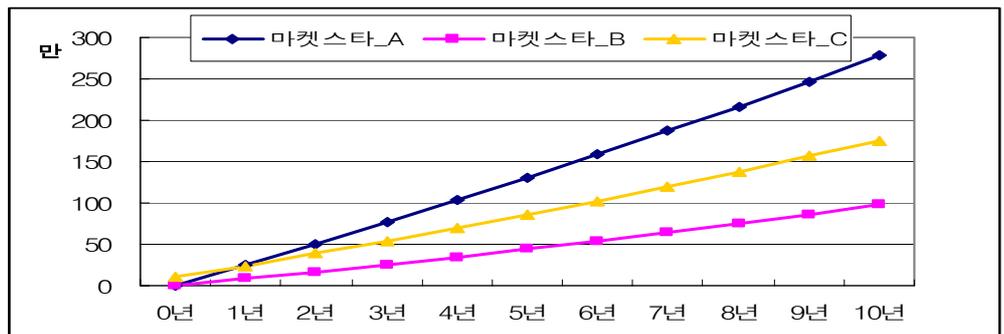
<1,000만원 투자시

(단위 : 원)

비용 예시>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종류 A	246,750	759,155	1,297,842	2,768,561
	종류 B	80,850	252,859	439,589	979,358
	종류 C	141,750	440,667	761,384	1,669,279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 상기 <수익자에 대한 과세>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및 이익금 등의 인출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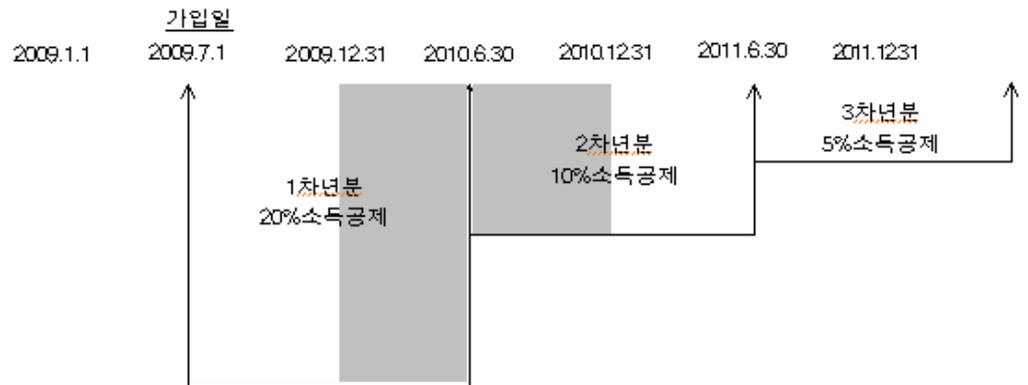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매입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을 방문하거나, 투자설명서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한 후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입수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매입)를 결정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을 방문하여 수익증권 매입을 청약합니다.

수익증권 매입의 청약을 신청하는 때에는 투자자금(청약증거금), 신분증, 청약서 작성용 도장(서명도 가능)을 지참합니다.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때에는 청약금을 납입한 시각이 15시 이전인 경우에는 청약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제외한다)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청약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이 입고되고, 청약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계좌로 환급됩니다. 다만,

<판매수수료>

▣ 종류A 및 종류B수익증권

판매회사는 종류A 및 종류B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종류C수익증권

판매회사는 종류C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 을 부과합니다.

※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 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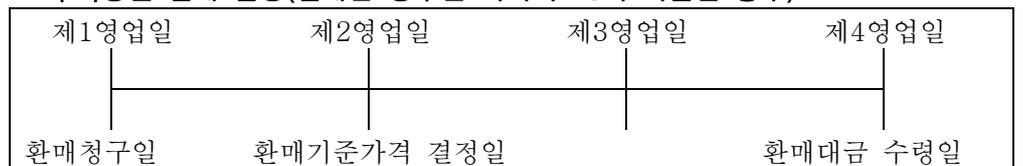
2. 환매

<환매 절차>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에 의하여 투자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 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판매회사에 가서 보유 수익증권의 전부 혹은 일부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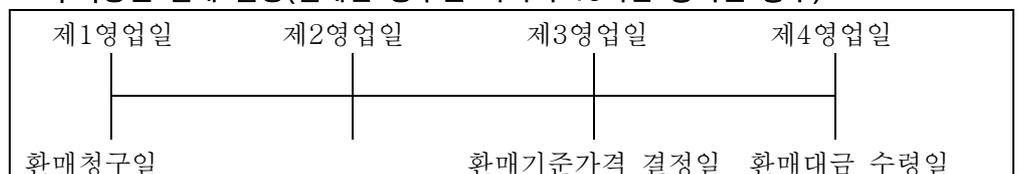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환매를 청구한 시각이 15시 이전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 환매 일정(환매를 청구한 시각이 15시 이전인 경우)



환매를 청구한 시각이 15시를 경과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 환매 일정(환매를 청구한 시각이 15시를 경과한 경우)



가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종류A, 종류B, 종류C수익증권 해당)

<환매청구관련사항>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의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수익증권의 소각>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소각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이익의 분배>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환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되거나 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 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운용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자산운용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비교지수(Benchmark)는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로 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 주식의 투자전략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의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중점 추구할 것입니다.

핵심 블루칩 및 미래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식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하여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가치투자(Value Investment)를 기본전략으로 할 것이나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적극적인 시세차익 전략도 함께 추구할 것입니다.

■ 채권의 투자전략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 채권등에 투자하여 채권의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를 제외함)

위와 같은 우량채권 등의 운용에 있어 채권의 만기보유전략과 같은 소극적인 전략 보다는 수익률곡선 및 채권간 스프레드 등을 이용한 저위험하의 고수익 전략을 활용하고, 회사 자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이자율 예측 및 채권발행 기관에 대한 신용분석 등에 의한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수행하여 자본이득의 획득을 도모할 것입니다.

■ 어음 등의 투자전략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환매를 원활히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입니다.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전략

선물투자 전략 : 기초자산의 적극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유 기초자산 한도 내에서 헷지전략을 사용합니다.

옵션투자 전략 : 기초자산 또는 선물 포지션의 헷지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적 위험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금의 전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정치, 법령상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등의 투자증권과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 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위험	시장 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 있습니다.
	종목 위험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채권투자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채권의 발행주체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므로, 보유채권을 중도에 매도할 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투자 위험	채권시장 이자율 변동은 채권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투자 할 경우 그 수익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용
주식	60% 이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비율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자산유동화 채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왑 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 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 기준
수익증권등	5%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

	(30% 이하)	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 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
투자증권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 기준
주식및채권 관련 장내 파생상품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 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u>주식선물</u> , 주식옵션, 코스닥 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 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 기준
<p>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채권 및 금리스왑거래의 투자비율은 다음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채권 및 금리스왑거래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 자 제 한
단기대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p>투자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p>○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p>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 투자</p>	<p>설정일 이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 하는 행위</p>
<p>계열회사 주식 투자</p>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 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월간은 4.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계획 중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비용, 위의 동일종목투자 중 본문의 규정과 파생상품투자 중 동일회 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 채권을 포함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장외파생상품	33 3 가 장외파생 상품 () 2 가 가 가 가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 선정기준

중개회사 선정기준의 기본원칙은 간접투자재산의 이익 기여도 및 매매체결 능력 등 월 단위로 평가하여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 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투자증권 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매월 마케팅항목(펀드판매기여부문, 마케팅기여도), 투자참고항목(리서치페이퍼, 메일서비스, 기업탐방추진, 세미나, 스포츠정보), 브로커능력항목(매매체결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항목(사이버를 포함한 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항목(요청자료의 응대)으로 항목별평가를 주식운용팀, 투자전략팀, 주식매매팀, 마케팅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상품거래	주식관련 장내파생 상품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월 마케팅항목(펀드판매기여부문, 마케팅기여도), 투자참고항목(리서치페이퍼, 스포츠정보),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항목(협의수수료)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투자전략팀, 주식매매팀, 마케팅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주식운용본부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등 장내파생 상품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는 때에는 청약금을 납입한 시각이 15시 이전인 경우에는 청약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제외한다)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청약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이 입고되고, 청약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계좌로 환급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판매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합니다.

수익증권의 매입의 청약을 위한 청약금을 납입한 시각이 15시를 경과한 경우에는 청약금을 납입한 다음 다음 영업일(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청약금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이 입고되고, 청약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계좌로 환급됩니다.

수익증권 , 15 가 .
 , 15 가 .
가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환매를 청구한 시각이 15시 이전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를 청구한 시각이 15시를 경과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15** **가**
, 15 **17**
가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환매신청 접수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15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환매연기>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사유
 -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의 2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이익의 분배>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환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되거나 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 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KTB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02-788-8400)
회사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 주요업무

<업무내용>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자산운용회사 의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증권의 취득, 매각 또는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수탁회사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위탁>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기준가격 산정업무
업무수탁자 : 외환펀드서비스주식회사
위탁업무의 책임 :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인 KTB자산운용(주)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비용 : 기준가격 산정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인 일반사무관리보수는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내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8.3.31	'07.3.31	항 목	'08.3.31	'07.3.31
유동자산	26,201	15,491	영업수익	33,219	13,700
고정자산	9,751	6,492	영업비용	17,791	9,120
자산총계	35,952	21,983	영업이익	15,428	4,580
유동부채	5,523	1,331	영업외수익	134	36
고정부채	1,088	606	영업외비용	176	52
부채총계	6,611	1,937	경상이익	15,386	4,564
자본금	16,545	15,300	특별이익	-	-
잉여금	12,721	4,237	특별손실	-	-
자본조정	75	509	세전순이익	15,386	4,564
자본총계	29,341	20,046	당기순이익	11,041	3,340

4. 운용자산규모

(단위 : 억원)

<2008.8.31 현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채간접	기 타	총계
42,510	13,443	15,850	8,996	6,308	6,094	405	3,332	96,93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안영희	42	주식 CIO	106 개	49,720 억	- 현대투자신탁운용 등 (총 15년 10개월)
김정희	43	채권 CIO	92 개	33,257 억	- 대신투자신탁운용 등 (총 20년 3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교보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1544-09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49.11.22. 자 본 금 : 1,800억원 자산총액 : 12,307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1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대우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1588-3322)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bestez.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70.9.23. 자 본 금 : 10,209억원 자산총액 : 50,483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8년 9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하이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1588-7171)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hi-ib.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89.10.30. 자 본 금 : 3,064억원 자산총액 : 4,246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89년11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광주은행>

주소 및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1588-3388)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kjbank.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8.11.20. 자 본 금 : 2,204억원 자산총액 : 116,806억원 판매회사 등록 : 2002년 9월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43.10. 2 자 본 금 : 75,281억원 자산총액 : 1,658,841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1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유진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eugenefn.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54. 5. 12 자 본 금 : 1,846억원 자산총액 : 6,604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6년 5월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현대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youfirst.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2. 6. 1 자 본 금 : 6,968억원 자산총액 : 54,535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6년 7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우리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wooriwm.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9. 1. 14 자 본 금 : 7,868억원 자산총액 : 100,965억원 판매회사 등록 :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한국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74. 9.16. 자 본 금 : 1,400억원 자산총액 : 43,821억원 판매회사 등록 : 2000년 3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ibk.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1. 8. 1. 자 본 금 : 22,914억원 자산총액 : 10,060,00억원 판매회사 등록 : 2002년 2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경남은행>

주소 및 연락처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kyongnambank.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70.4.18 자 본 금 : 6,088억원 자산총액 : 억원 판매회사 등록 : 2002년 7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대구은행>

주소 및 연락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dgb.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7.10.7 자 본 금 : 6,600억원 자산총액 : 169,811억원 판매회사 등록 :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1588-9999)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kbstar.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3.2.1. 자 본 금 : 16,819억원 종업원수 : 25,096명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1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제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49 (☎1588-0079)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e-jejubank.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9.9.19 자 본 금 : 1,300억원 종업원수 : 500명 판매회사 등록 : 2002년 4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하나대투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3771-7114)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daetoo.com)참조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 설립(대한투자증권(주)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대신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1588-4488)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daishin.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2.7.27 자 본 금 : 3,849억원 종업원수 : 1,919명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3월 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키움닷컴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1544-90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kiwoom.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2000.01.31 자 본 금 : 613억원 자산총액 : 9,548억원 판매회사 등록 : 2000년 9월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브리짓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1566-0900)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bridgefn.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54.08.30 자 본 금 : 500억원 자산총액 : 1,709억원

<메리츠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1588-3400)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imeritz.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73. 2. 24. 자 본 금 : 1,741억원 자산총액 : 20,117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1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동부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 여의도동 36-5 (☎369-30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winnet.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82.12.20 자 본 금 : 741억원 자산총액 : 20,093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1년 7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한화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1544-8282)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koreastock.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2.07.19 자 본 금 : 2,108억원 자산총액 : 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3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88-1111)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hanabank.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59.12.01 자 본 금 : 10,592억원 자산총액 : 81,622억원 판매회사 등록 :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삼성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1588-2323)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samsungfn.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92.11. 자 본 금 : 억원 자산총액 : 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6년 11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굿모닝신한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1588-0365)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goodi.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73.04.02 자 본 금 : 8,486억원 자산총액 : 41,269억원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1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부산은행>

주소 및 연락처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38 (☎1588-6200)
영업점	홈페이지(http:// www.pusanbank.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67.10.12 자 본 금 : 14,700억원 자산총액 : 272,980억원 판매회사 등록 :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솔로몬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3770-90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solomonib.com)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82.12.24 자 본 금 : 1,600억원 자산총액 : 2,471억원 판매회사 등록 :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미래에셋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3774-17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co.kr)참조

<토러스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709-23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taurus.co.kr)참조

<IBK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생명63빌딩 (☎1588-003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ibks.com)참조

<LIG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1544-76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ligstock.com)참조

2. 주요 업무

<판매업무에 관한 사항>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간접투자증권의 교부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이의 수익자에 대한 제공 및 공고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판매회사의 의무>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의 책임> 판매회사가 법,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의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02-3770-8800)
영업점	홈페이지(http://www.ksfc.co.kr)참조
회사연혁	설 립 일 : 1955.10.11. 자 본 금 : 3,400억원 자산총액 : 명 수탁회사 등록 : 2002년 12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2. 주요 업무

<업무내용>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상기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탁회사의 선관의무>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운용행위감시>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판매회사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수탁회사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의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의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02-729-8402)
회사연혁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업무내용> 기준가격 산정
 결산서류 등의 작성
 기타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된 보고서의 작성 등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연락처	02-399-3350	02-3770-0400
설립일	2000. 5. 29	2000. 6. 20.
등록일	2000. 7. 1.	2000. 6. 29.
자본금	50억원	30억원

2. 주요 업무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

시가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투자증권에 관한 만기수익률(YTM)과 가격을 1일 1회 제공

투자증권의 만기수익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투자증권의 가격은 10,000원당 가격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상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명부 관리방법>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신탁약관·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위의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위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작성을 위한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의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하여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하여 기준일을 설정 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권한 : 의결사항> 이 수익자총회는 법과 신탁약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하는 경우에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의 행사> 수익증권의 의결권은 수익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의결방법>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연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 등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 잔여재산분배

<상환금등의 시효>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미지급금의 처리>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투자신탁의 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 다른 투자신탁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해지된 투자신탁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법이 정한 보존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계감사인인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성명 및 주소
- 예탁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봅니다.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및

1,000,000,000좌권의 7중으로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의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의 재교부>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권의 이전은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증권을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산운용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수익자에게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매 영업년도의 결산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 분기 정기보고서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준가격계산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판매회사 및 수탁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합니다. 이 경우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회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공시 확인> 정기공시사항 및 보고서는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신탁약관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인 다음에 해당하는 신탁약관의 변경사항은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외의 신탁약관의 변경사항은 서울경제신문에 공고(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도 공고)하거나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합니다.

<기타 수시공시>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법이 정하는 사항

<수시공시의 확인>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투자신탁의 의결권]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다의 중립적 투표**’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투자신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결권 행사 방향>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중립적 투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관계판매회사 및 그 계열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주요출자자가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자산운용회사와 관계판매회사 및 그 계열회사 또는 주요출자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립적 투표를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열거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중립적 투표를 행하면 투자신탁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법인으로의 양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의 임면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변경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2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중립적 투표를 행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9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법인의 주식

자산운용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 상기의 방법 외에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의결권 행사 내역의 공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주식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KTB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환율변동위험 포함)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